

# 교직원 조기퇴직 수당 지급 규정

개정 2018.12.04. 개정 2020.02.27. 개정 2023.05.31. 개정 2025.12.01.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해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직원의 조기퇴직 수당 (이하“수당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퇴직일 현재 정규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물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2장 조기퇴직수당

### 제3조 (조기퇴직자의 대상)

- ① 조기퇴직 적용대상자는 대학발전 구조조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.
- ② 교직원으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 <신설 2010.3.1.>
- ③ 5년이상 20년미만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원활한 대학운영을 위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자 <신설 2013.1.1.><개정 2018.12.04., 2025.12.1.>

### 제4조 (조기퇴직자의 제한)

- ① 매 학기 조기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조기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  1.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
  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
  3.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
  4.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다만, 공상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
  5. 그밖에 조기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- ② 총장은 교직원 수급형편이나 예산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의 지급대상범위

를 제한할 수 있다.

#### 제5조 (조기퇴직자의 공고)

인사담당 부서장은 총장과 협의한 후 매 학기 조기퇴직 대상 및 인원·신청기간·수당지급 방법·수당지급일·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조기퇴직 신청기간 개시일 10일전까지 각 부서에 공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6조 (조기퇴직의 신청)

- ① 조기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조기퇴직신청서(별지서식 제1호)를 퇴직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인사담당 부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전항의 퇴직예정일은 매 학기말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일반직원의 경우는 6월말 또는 12월말로 할 수 있다.

#### 제7조 (심사위원회의 설치)

- ① 조기퇴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#### 제8조 (조기퇴직자의 심사결정)

- ① 위원회는 조기퇴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 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조기퇴직대상자를 심사·선정한 후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  1. 공상으로 폐질상태에 이른 교직원
  2. 상위직 교직원
  3. 장기근속 교직원
- ② 전항의 “폐질상태”라 함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와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(소견서)를 참고하여 이를 판정한다.
- ③ 총장은 제①항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기퇴직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.
- ④ 조기퇴직대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장에게 청하여 확정된 자료한다.

#### 제9조 (조기퇴직자 결정 통지)

제8조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담당 부서장은 그 결과를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9조의2 (결정의 취소)

총장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신청기간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신설 2010.3.1.>

#### 제10조 (사직원 제출)

조기퇴직 대상자는 조기퇴직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총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11조 (수당지급)

조기퇴직자로 결정된 교직원의 수당지급액은 [별표 1]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. 단, 1인당 지급액의 최고 한도는 200,000천원으로 한다.<개정 2018.12.04., 2020.02.27.>

#### 제12조 (조기퇴직신청자 예우)

조기퇴직 신청에 따른 조기퇴직자에게는 학교발전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<전문개정 2008.09.01.><개정 2018.12.04.>

#### 제13조 (수당의 지급시기)

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3.05.31.>

#### 제14조 (수당의 수령권자)

- ① 수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.
- ②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수당지급 수령권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제4장 보 칙

#### 제15조 (사무관장)

조기퇴직 등에 관한 사무는 인사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18.12.04.>

#### 제16조 (시행규칙)

조기퇴직 등 수당지급의 시행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#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5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03.19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4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12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2.2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05.3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12.0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조기퇴직수당 및 위로금 산정표<개정 2014.3.19., 2018.12.04., 2020.02.27., 2025.12.01.>

대상자 근속기간	조기퇴직수당 산정기준	위로금 산정기준
(1) 5년이상 10년미만	퇴직당시 기준금액 × 9개월	조기퇴직수당지급액의 30%이내
(2) 10년이상	퇴직당시 기준금액 × 12개월	조기퇴직수당지급액의 40%이내

※ 기준금액

- 직원 : 급여총액의 월액(기본급여, 정근수당가액, 행정연구비, 직급보조비, 학사지도비, 급량비, 명절휴가비, 정근수당, 행정연구수당)
- 교원 : 연봉총액의 월액(기본급여, 연구비, 성과연봉, 급량비, 명절상여금 포함)
- 위로금 : 학교발전기여도 및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.

※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근속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근속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(별지서식 제1호)

##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서

소속		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교 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술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능직	직급	
성명	(한글)	주민등록 번호		전화번호 (자택)	
	(한문)	주소			
근속년수			정년일		
경력 년수					
구분	신 청 자				확인자
학교법인 해전학원	. . . - . . . ( 년 월)				년 월
해전대학교	. . . - . . . ( 년 월)				년 월
계	. . . - . . . ( 년 월)				년 월
수당 청구액	일금 원정( )				
정 년 잔여기간		산출내역			
대 상 자 근속기간					
수당지급 대상기간					
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( )퇴직 하기 위하여 교직원 조기퇴직 수당 지급 규정 제 조에 의거 ( )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
200 . . . .					
신청인 직 성명 (서명)					
확인	인사담당	(서명)	연금담당	(서명)	
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
200 . . . .					
<b>해 전 대 학 총 장</b>					
학교법인 해전학원 이사장 귀하					

- ※ 첨부 : 1. 인사기록카드 사본(원본대조 확인) 1부  
2. 연금기록카드 사본(원본대조 확인) 1부  
3. 증빙자료(교직원 조기퇴직 및 수당지급규정 제8조 제2항 해당자) 1부

(별지서식 제2호)

교직원 조기퇴직 수당 지급 통지서

○ 수 신 :

귀 부서 소속 교직원이 다음과 같이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합니다.

- 다음 -

## 1.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인적사항

소 속		직위	
성 명	(한글)	(한자)	
주민등록번호			

2. 조기퇴직수당 결정액 :

3. 조기퇴직수당 지급예정일 :

4. 조기퇴직수당 지급처 :

20 . . .

총 무 처 장

## 조기 퇴직원

1. 소속 :

2. 직급 :

3. 성명 :

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혜전대학교 총장 귀하